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성주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군수 및 농어업인, 농어업관련단체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적 명시(안 제4조 및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나. 예산조치 : '15년 예산에 54억원 반영되었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5. 6. 8 ~ 6. 29.)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농업인 교육지원」포함 권고 반영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나목・다목에서 정한 단체(산하단체 포함)
 나.「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단체(산하단체 포함)
 다.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등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
2. 농어업・농어촌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 지원
3.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

4.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
5. 토양 환경개선 사업 지원
6.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 지원
7.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8.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
9.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어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지원
10.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
11. 기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지원사업의 범위(제4조 관련)

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지원
 가. 결혼이민자농가 지원
 나. 선도 농어업인 시설 지원
 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라. 농업기계 지원
 마. 퇴비제조장 설치·개보수 지원
 바. 육묘장 설치·개보수 지원
 사. 벼육묘용 기자재 지원
 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자. 정부양곡 보관창고 설치·개보수 지원
 차. 공공비축미곡매입용 기자재 지원
 카. 벼건조저장시설 설치·개보수 지원
 타. 원예작물(과수, 채소, 화훼, 특용, 약용, 버섯) 재배농가 시설 및 기자재 지원
 파. 농산물 산지유통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하. 축산농가 기자재 및 시설등 지원
 거. 조사료 생산 지원
 너. 가축 개량 지원
 더. 축산물 판매 및 가공시설 지원
 러. 6차 산업 지원

2. 농어업·농어촌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 지원
 가. 참외 및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1) 기후대응 시설환경개선 농자재 시범사업 지원
 2)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및 생력화 시범사업 지원
 3) 토양 염류집적 해소 신기술 시범사업 지원
 4) 참외 및 소득작목 병해충 종합대책 시범사업 지원
 5) 시설하우스 고온 및 저온기 고품질 과채 시범사업 지원

 나. 원예작물의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1)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생력화 시범사업 지원
 2) 원예작물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사업 지원

3) 원예작물 신품종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
4) 이상기상대응 결실 안정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 지원

다.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 지원
1) 특용작물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지원
2) 특용작물 환경개선 및 생력화 시범사업 지원
3) 기후대응 새소득 대체작목 보급 시범사업 지원
4) 새소득작목 생력화 및 시설개선 시범사업 지원

라.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1) 벼농사 생력화 시범사업 지원
2)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 지원
3) 고품질 쌀 신품종 확대 시범사업 지원
4) 고품질 종자 채종 시범사업 지원
5) 병해충 방제 기술 시범사업 지원
6)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7) 밭작물 생력재배 시범사업 지원
8) 밭작물 안전생산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사업 지원

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
1) 축산 생산성 향상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 지원
2) 축산 질병 예방 시범사업 지원
3) 가축위생관리 향상 기술 시범사업 지원
4) 사료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 지원
5)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시범사업 지원
6) 미생물 활용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지원
7) 미생물 활용 악취저감 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

3.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
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다. 친환경인증추진비 지원
라. 참외 발효과 유통근절 지원

마. 성주참외 맞춤형액비, 미생물 개발 지원
바.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사. 축산분뇨(양돈)자원화 지원
아. 인공 수정료 지원
자. 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약품 및 소요경비 지원

4.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
가.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
나.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제주도 홍보관 등)
다. 농특산물 국내외 판촉 및 수출 지원
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판장, 판매장 등 농산물산지유통 관련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운영활성화 지원
마. 지역특산물 및 가공업체 지원

5. 토양 환경개선 사업 지원
가. 토양개량제 및 토양소독제 지원
나. 유기질비료 및 녹비작물 종자 지원
다. 참외농가 토양환경 개선 지원

6.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 지원
가. 영농폐기물 처리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나. 축산농가 생균제 지원
다. 축산농가 톱밥공급 지원
라. 성신농장축산분뇨처리시설(전기료, 약품구입비) 지원

7.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나. 기타 농업인 자녀관련 지원
다. 농가 도우미 지원
라.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마.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바.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사. 유기견 위탁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아. 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지원

8.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
가. 후계농업인력 육성·지원
나. 농어업인 관련단체 육성·지원
다. 농민사관학교 교육생 지원
라. 농업인대학 교육생 지원
마. 여성농업인 교육 지원
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 농촌관광 및 농촌민박 사업자 교육 지원
아. 산지유통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
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및 교육, 홍보 지원
차.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 지원
카. 기타 농업인·단체 교육 지원

9.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어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지원
가. 지역특산물 시식·판촉·홍보비 지원
나.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보급 사업 지원
다. 농업관련 축제 지원

10.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 :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장비 지원

11. 기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